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11월 03일 10시 10분



목차

목차	2
민원사무편람 및 서식 - 전체	3
동물등록 변경 신고	3

동물등록 변경 신고

작성일 2017.07.04 조회수 162 수정일 2023.04.05 00:00
10:40

✓ 민원사무명	동물등록 변경 신고
✓ 민원내용	동물등록 변경 신고
✓ 관계법령	「동물보호법」 제12조제1항·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항
✓ 구비서류	<p>[첨부서류]</p> <p>1. 동물등록증(변경신고 시)</p> <p>2. 등록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그 경위서</p> <p>[담당공무원 확인 사항]</p> <p>1. 개인인 경우: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</p> <p>2. 법인인 경우: 법인 등기사항증명서</p>
✓ 처리부서	농업정책과
✓ 협의부서	
✓ 접수	농업정책과, 정부24
✓ 수수료	없음
✓ 처리기간	10일
✓ 기타사항	
✓ 흐름도	
✓ 기타참고사항	<p>- 방문 어려울 경우, 민원인(소유자)가 시·군·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, 정부24 홈페이지 (www.gov.kr)에서 ‘동물의 상태 변경(분실/사망/회수/중성화)’ 및 ‘소유자 변경’ 가능</p> <p>- 승인 여부 : ‘소유자 변경 신고’의 경우 시·군·구청 승인 필요</p>

첨부파일

전체(Zip)다운로드

 [별지 제1호서식] 동물등록(신청서, 변경신고서)(동물보호법 시행규칙).hwp (776 hit/ 21.0 KB) ↓

미리보기



이전글 가족분뇨 고체연료 사용신고	다음글 옥외광고물관리자 변경 신고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COPYRIGHT © YEOSU-CITY. ALL RIGHTS RESERVED.

Yeosu Web Contents

